

표제와 명예훼손

D. 맥린

이 글은 「Journalism Quarterly」 (1989sus 겨울호)에 실린 Deckie McLean(웨스트 일리노이즈 대학 신문학과 교수)의 「Libel Consequences of Headlines」를 번역한 것이다.
편집자 주

『3 명의 소도둑, 복죄하다』라는 표제(Head line)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기사 내용이 부푸셀라 (역자주: 열병의 일종)검사를 받지 않은 소떼를 주경계선 밖으로 몰고 간 혐의에 대해 3 명이 복죄했다는 것일 경우는 문제가 된다. 위 표제가 법률적 문제를 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기사내용이 정확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가. 1986 년 미시시피주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보통의 독자들은 표제와 내용을 논리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보도에 있어서 언론이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그런 자유가 사실을 잘못 보도하거나 진실을 오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시하고 위 3 인이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신문사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일반적으로 표제와 관련된 소송을 다루는 법원의 접근방식과 일치한다. 표제는 그 자체가 명예 훼손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표제의 정확성은 기사본문의 정확성만큼 중요하다. 위 판결에 관여한 판사를 비롯한 몇몇 판사들은, 신문독자들이 기사본문의 내용과 표제에서 언급된 바가 서로 틀린다 할지라도 잘못 표현된 표제를 믿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판사들은 신문독자는 종종 표제만 읽는다는 입장을 취한다. 헌법에 보장된 명예보호규정은 표제에도 적용되지만, 표제에서의 오보는 기사에서의 오보보다 신문사측에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 같다. 표제의 오보는 더 잘 눈에 띄고, 알게 되면, 그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은 좀체로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 같다. 또한 표제를 원인으로 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신문사측은 법정에서 불러 한 것 같다. 예를 들면 1985 년의 Burgess v. Reformer 사건에서 버몬트주 대법원은, 버몬트주 소재의 한 신문사가 청구한 악식재판을 인정하 하급심 결정을 파기했다. 이 신문은 마크 흠킨스 대학의전 학장인 원고가 횡령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대 배심, 마크 흠킨스대 Burgess 씨 횡령혐의로 조사』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였던 바, 기사본문내용은 정확했으나 표제가 잘못되어 소송이 제기됐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주대법원은 현 대학이사회 임원인 원고를 사인으로 보았다. 1981 년 Buratt v. Capital City 사건에서 주항소법원은 『경찰배심원 뇌물수취』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루이지애나주의 한 신문에 대해 표제가 경찰배심원이며 교구관리인인 원고의 지위를 떨어뜨렸고, 그 점에서 현실적 악의가 입증된다면서 소송의 기각을 인정하지 않았다. 기사의 내용은 원고가 교구내에 있는 자신의 소유지에서 로드워를 한다고 정확히 보도했었다. 1980 년 Schermerhorn v. Rosenberg 사건에서 뉴욕항소법원은 뉴버그지역 재개발위원회에 한 명의 흑인을 참여시키려는 노력이 있는 상황에서 『쉐머호른, 뉴버그 재개발위원회에 흑인참여 원치 않아』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한 신문에 대해, 기사의 내용과 관계없이 표제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사는 주상원의원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원고가 「재개발위원회에 자격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고 정확히 보도했다. 1975년 *Sprouse v. Clay Communications* 사건에서 법원은, 『세네카 록 여행사업, 스프로우스 후보를 부유하게 하다.』 『짐 스프로우스에겐부를, 세네카에겐 작은 이익을』이라는 몇몇 (주지사 후보에 관한) 표제를 보도한 서부 버지니아개의 한 신문에 대해 표제가 너무 크며, 표제가 기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실과 다른 결론으로 일반독자를 유도할 경우 허위사실이 공포되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다루어질 수 있다면서 배상금지급판결을 내렸다. 1981년 *Gurda v. Orange County* 사건에 뉴욕항소법원은 『구르다, 유명회사 설립자로 판명』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신문사에 대해 「사기죄를 중시한 표제가 기사내용을 현저하게 호도하였다는 점은 상당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전체 기사를 읽은 독자가 형사상 사기혐의가 없다는 것을 분간할 수 있을지라도 독자는 표제를 상당히 인식할 것이며, 기사본문의 설명을 더 이상 읽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시하고, 신문사의 약식재판을 허가한 하급심의 결정을 파기했다.

Gertz 판결의 영향

부정확한 표제를 좀더 확실하게 규제하려는 판사들의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공인이나 사인이나에 따라 책임소재를 구분한 Gertz 판결은 표제를 원인으로 하여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실 명백하게 상반되는 예가 없다면, 진실한 기사에 관한 부정확한 표제에 현실적 악의가 없고 원고가 공인이라면 명예훼손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미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상반되는 판결의 결과로써 Gertz 판결은 하나의 경험적인 규칙을 제공한다. 이와는 달리 진실한 기사내용에 관한 부정확한 표제에 대해 Gertz 판결의 과실기준을 적용하면 원고가 사인인 경우 명예훼손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다. 이러한 판결은 위에서 본 *Whitten* 과 *Burgess* 판결이다. 1904년 *Bryant v. AP* 사건에서는 진실한 기사에 관한 부정확한 표제에 대해 현실적 악의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소송은 버진 아일랜드의 한 신문이 캐리비안해의 한 섬에서 발생한 소동을 보도하면서 『성 키츠 지방의 관리, 방화죄로 구속』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자 제기되었다. 그 기사는 원고인 관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폭력을 행사하도록 자극한 죄로 체포되었다고 정확하게 보도했다 성 키츠 지방 노동당 지도자인 원고가 공적 인물임을 중시하면서, 법원은 표제에는 상당한 부주의가 있었을 뿐 현실적 악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신문이 다음날 정정보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언론사에 대해 약식재판을 허용했다. 이와 유사한 판결로 1982년의 *Bellamy v. Arno* 사건이 있다 표제에서 부하직원을 성적으로 괴롭힌다고 지칭된 지방관리가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에서, 법원은 다음날 신문이 정정보도 했고, 원고가 공인임에 비추어볼 때 표제에는 현실적 악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언론사에 대해 약식재판을 허용했다. 그 기사는 본문에서 법원관리인 원고가 인종적으로 부하직원을 괴롭혔고 정확하게 보도했다. 1980년 *Brophy v. Philadelphia News Papers* 사건에서 펜실바니아 대법원은 『포츠빌 살해사건, 수습인가 복수인가』하는 표제는 비록 그것이 살인범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현실적 악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 기사는 강도미수로 추정되는 범인을 경찰서장 아들인 한 경찰관이 살해했다고

보도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살해사건은 경찰서장과 원고인 경찰국장간의 논쟁에서 비롯된 결과라고들 말한다. 다른 판결들은 표제가 공인이나 공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현실적 악의가 있다는 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 판례는 위에서 논의한 Shermerhorn 사건과 Sprouse 사건이다. Shermerhorn 사건에서 뉴욕항소법원은 「마지막으로 악의의 문제에 관해 살펴보건대, 원고와 피고 양측은 기사 작성자인 Rosenberg 가 인터뷰를 했다는 점과……Shermerhorn 이 표제의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Rosenberg 는 그 자신이 표제를 뽑지 않았으므로, 편집자가 그에 대해 책임 있을 뿐이라고 증언한다. 그러나 당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해 살피건대, Rosenberg 의 증언을 믿지 않은 배심의 결정은 정당하다……편집자의 증언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지만 어쨌든 당 법정에 결코 제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Times-Herald 의 에이전트로서 그 자신의 업무영역과 관련 지어 볼 때, 잘못이 있음을 실제로 알면서도 명예훼손적인 기사제목을 Rosenberg 자신이 작성했다고 판단한 배심의 결정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Sprouse 판결의 영향은, 신문이 정당을 위해 정치적 공격을 할 수 있다는 판결에 의해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신문의 자율규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신문이 정당정치에 참여함으로써 객관적인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에 원고에 승소판결을 내린다고 실시했다. 법원은 신문이 정당정치에 참여하여 정치적 반대자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부정확한 표제는 현실적 악의의 증거가 된다고 판결했다.

표제만으로 판결할 것인가

표제를 원인으로 한 명예훼손소송에서 법원이 끊임없이 직면하는 문제는, 기사에 관계없이 표제만으로 판결할 것인가 아니면 기사와의 관련속에서 판결할 것인가이다. 물론 이 둘의 접근방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하든 모두 피고 언론사측에는 불리하다. 표제만으로 판결할 경우 정확한 기사는 표제를 원인으로 한 명예훼손소송에서 언론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기사와의 관련속에서 판결할 경우, 정확한 기사는 표제가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확인해 줄 뿐이다. 예를 들면 1960 년 Floyd v. Atlanta Newspaper 사건에서 조지아 법원은 『두 하원의원 정직성 대결』이라는 표제는 본문에서 두 하원의원의 이름이 거명되었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한편 1962 년 Falrbanks v. Pitka 사건에서 알래스카 대법원은 『Nothpole 교사, 위원회와 충돌』, 『지역경찰에 해고된 여교사 추방요구』라는 표제는 기사 서두부분에서 원고의 이름이 밝혀졌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1979 년 미국법률지에 게재된 한 논문은, 표제만을 고려하는 것은 기사제목을 기사 전체의 일부분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쨌든 「표제만을 고려하는 것」, 그 자체는 「공정한 표현규칙」(fair-index rule)이라는 하나의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한 표현규칙에 따르면 진실한 기사를 공정하게 표현하지 못한 표제는 기사에 적용되는 어떤 특권에 의해서도 보호받지 못한다. 많은 법원이 「공정한 표현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비해 또 다른 법원에서는 독자들이 기사본문을 포함한 전체의 부분으로서 표제를 읽는다고 말한다. 어떻게 표현하든, 대부분의 법원은 동일한 방법으로 이런 사례들에 접근한다. 첫째, 법원은 표제와 기사본문을 살핀다. 만약 표제가

현저하게 들렀다면, 법원은 기사본문이 정확할지라도 기사 전체가 틀렸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법원은 표제는 기사와 별개로 명예훼손적이라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극명하게 보여준 판례가 1960년 Reardon v. News Journal 사건에 대한 델라웨어 대법원의 판결이다. 주 대법원은, 표제는 기사본문과 함께 판단되어야 하는데, 표제에서의 오보는 기사본문에 의해 정정될 수 있으며, 별문제가 없는 기사는 표제에 의해 명예훼손적인 것이 될 수도 있으며, 표제의 언어가 기사에서 정정되지 않으면 표제는 기사와 별개로 판단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문제된 표제는 『청년봉사위원회, 판사 리아튼을 비난하다』였다. 법원은 기사가 표제를 정정했다면서 소송의 기각을 확정했다. 뉴욕법원은 Reardon 판례와 같은 접근방식을 채택하는 법원들이 겪게 되는 논리적 근거에 있어서의 불일치를 확실하게 완화시켜 주었다. 「공정한 표현규칙」을 처음으로 주장한 법원이 뉴욕법원이지만 그 주의 법원들은 임의로 이러한 논리적 근거를 채택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것처럼 보인다. 「공정한 표현규칙」은 1927년 『의사와 투자가, 사기죄에 직면』, 『엘리자베스 니콜부인, 「16,000불 사기 당했다」』라는 표제를 원인으로 한 Campbell v. New York Post 사건에서 최초로 주장되었다. 기사내용은 원고와 또 다른 한 남자가 그들의 말을 믿고 투자한 부인에 의해 고소 당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항소법원은 「표제가 진실한 기사를 공정하게 표현하지 못했다면, 그 표제는 면책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충분하고 공정하며 편견이 없는 기사에 인정되는 제한적 특권이 표제에도 적용될 것인가는 배심이 결정할 문제이며, 「사기행위」라는 말은 범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신문사 승소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허락했다. 한 뉴욕법원은 Shermerhorn 판례의 이론적 근거에 따라, 부정확하고 명예를 훼손한 표제는 본문에서 그것이 정정되었다 할지라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Shermerhorn 사건의 공정한 표현논리를 인용했다. 다른 뉴욕법원은 1982년 Frederickson v. New York Post 사건에서 그 규칙을 인용했다. 살인사건 피의자인 진 해리스의 사설탐정인 프레드릭슨은 신문이 그의 고객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건방지지만 청순한』이라는 표제로 보도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 법원은 문제의 표제는 명예훼손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기사내용을 공정하게 표현했다면서 피고측의 기각신청을 받아들였다. 1977년 『경찰의 실책, 살인범 석방』이라는 표제를 원인으로 한 Graham v. New York News 사건에서 뉴욕법원은 소송을 기각했다. 기사는 경찰이 살인자로 판명된 한 남자를 처리과정에서 석방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원고는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었다 법원은 표제의 의미는 기사의 전체적인 의미와 다르며, 공표내용을 부분으로 분리할 수 없다면서 기각을 동의했다. 또한 1980년 『Jackson Heights, 코카인 자본』이라는 표제를 원인으로 한 Shapiro v. News Day 사건에서 뉴욕법원은 만약 전체 기사내용이 명예훼손적이지 않다면 표제에 사용된 단어들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측의 약식 재판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러한 모순된 것 같이 보이는 접근방법들의 전체적인 결과는 가장 문제가 많은 표제는 기사와 분리해서 다루어야 하는 반면, 명확하게 명예를 훼손하지 않은 표제들은 전체의 일부분으로 간주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뉴욕지방 이외의 법원판결은 좀더 「공정한 표현」 접근방법에 일관되게 일치하고 있다. 1957년 Beyl v. Capper 사건에서 캔사스 대법원은, 신문은 법에 저촉되는 내용을 보도할 수 있는 제한적 특권을

부여받고 있으며, 심지어 과장된 표제도 공정하게 표현되어 있고 또한 악의가 없다면 제한적 특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할 정도로까지 공정한 표현규칙을 인용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표제는 『곡물절도단 캔사스 출현』이었으며, 불만은 기각되었다. 1955 년 『소도독은 암소를 흠치고/황새는 암소를 방문하고/궁전은 바다오리가 점령하다/』는 표제를 원인으로 한 Melton v. Joplin 사건에서 법원은 위와 동일한 주장을 폈다. 그러나 다른 사건에 있어서, 공정한 표현규칙을 적용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규칙을 인용하지 않았다. 『팔려고 내놓은 어린이』, 『프랭크린 암시장에서 어린이 매매』라는 표제를 원인으로 한 Las Vegas Sun v. Franklin 사건에서 네바다 대법원은, 그 표제는 기사를 공정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면서 본문과 별개의 것으로 판단하여 표제자체가 본질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1971 년 Binder v. Triangle Publications 사건에서 펜실바니아 대법원은 『공판에서 적나라하고 기묘한 사람의 삼각관계 웃음거리 되다』라는 표제는 법원에 제출된 후속보도기사와 일치하며 문제의 표제는 기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면서, 피고인 발행인 측에 약식재판을 인정했다. 1977 년 『소문나고 준비된 규격명세서 요구』라는 표제를 원인으로 한 Forrest v. Lynch 사건에서 루이지애나 항소법원은 표제가 기사를 공정하게 표현하지 못했다면서, 기술자인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할 하급심을 확정했다. 또한 1902 년 『여성지방의원 사기죄로 수감되다』는 표제를 원인으로 한 Dennis v. Panax 사건에서 매콤지방의 미시건주 순회법원은, 표제는 원고가 형사상 유죄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사를 공정하게 표현했다면서 피고에게 약식재판을 인정했다. 기사는 원고는 사기죄로 체포되었지만 유죄가 인정된 것은 아니더라고 보도했다. 공정한 표현규칙은 이러한 뉴욕지방이외의 법원판결에서 살펴볼 때 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인용되는 공식적인 규칙이다. 어쨌든 공정한 표현규칙을 인용하는 것은 절대적이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공정한 표현규칙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많은 법원이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만약 표제가 정확한 기사를 공정하게 표현했다면 표제는 진실한 것이다. 만약 정확한 기사를 공정하게 표현하지 못했다면, 그 표제는 틀린 것이다. 만약 부정확한 기사를 불공정하게 표현했다면, 기사자체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표제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표제가 부정확한 기사를 공정하게 표현했다면, 표제와 기사모두 오보이다. 기사가 오보이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확실하며, 그것이 사인원고에 관한 오보이고, 또한 공인에 관해 현실적 악의가 있다면, 그 기사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표제는 다른 기사와 같이 동일한 명예훼손규정에 저촉된다. 공정한 표현규칙은 하찮은 것이지만 그 자체로써 오보이고 명예를 훼손한 표제가 정확한 기사로 인해 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피고가 승소한 사례

표제의 대담성, 함축성, 광독성, 표제만을 읽는 독자들의 습관, 표제가 끼친 영향은 쉽게 무시하거나 용서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요인들을 고려한 판사들의 판결의지 때문에, 비록 표제가 명예훼손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신문사인 피고들이 표제를 원인으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도 있다. 1976 년 『부인 살해의혹 남편,

석방되다』라는 표제를 원인으로 한 Ross v. Columbia News paper 사건에서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법원은, 본문에서 표제의 오보가 정정되었으므로 소송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기사는 마지막문장에서 부인은 살아있고,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다. 1983 년 『악당 대 언론』이라는 표제를 원인으로 한 Antonelli v. Field Enterprises 사건에서 일리노이스 항소법원은 표제와 기사는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데 「악당」이라는 단어는 원고의 과거 범죄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면서, 소송의 기각을 확정했다. 『경찰 절도혐의에 직면할 듯』, 『주경찰 절도죄로 기소』, 『절도죄로 기소된 경찰』 등의 표제를 원인으로 한 Seymour v. A. S. Abell 사건판결에서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은 피고 신문사에 대해 약식재판을 허용했다. 기사본문에서는 경찰의 혐의를 횡령죄(conversion and misappropriation)로 보도했는데, 법원은 표제에 사용된 절도죄 (theft) 란 단어는 함축적이며 부정확하지도 않으며 현실적 악의가 없을 뿐 아니라 법률적 의미도 없다고 실시했다. 1974 년 공적 인물인 변호사가 제기한 McNair v. Hearst 사건에서 신문사측은 승소 판결을 얻어내지 못했다. 표제뿐만 아니라 리드에도 명예훼손 내용이 있었다. 『높은 이혼 비용』 제하의 기사 리드부분에서는, 한 부인의 이혼소송을 담당한 변호사가 그 수임료로 부인의 집을 얻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기사의 나머지 부분은, 부인의 전남편이 정착금을 지불하지 않아 저당금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집을 잃었고 그 시점에서 변호사가 문제의 집을 구입했다고 보도했다. 제 9 연방순회법원은 배심은 표제가 잘못 되었으며, 리드부분에서 일반적 명예훼손의 근거인 악의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신문사에 대한 약식재판을 파기했다. 공정한 표현의 규칙에서 볼 때, McNair 사건에서 법원은 표제와 리드부분은 기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기사와는 별개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실시했다. 그 판결은 또한 당 사건의 표제는 리드부분에 오보가 있는 기사를 공정하게 표현했으며, 비록 표제는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지만, 기사가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다. 어떻게 해석하든 다른 판결과 마찬가지로 그 판결은 표제에서의 오보가 기사에서 정정되었다 할지라도 명예훼손판단의 근거가 되는 현실적 악의 유무에 따라 판결이 내려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표제는 특별한 명예훼손 문제를 야기한다. 표제가 오보이고 상당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기사에서 그것이 정정되었다 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편집자가 특별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려면, 표제가 비록 기사는 아닐지라도 그것이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